

#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참고자료

2019. 7. 24.

금 융 위 원 회

1

**소비·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  
[신한카드, 신한금융투자]**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자본시장과		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	
신한카드	김형용 부부장 (02-6950-8022)	손영채 과장	02-2100-2650	박종길 부국장	02-3145-7616
신한금융투자	김현중 대리 (02-3772-3836)	나혜영 사무관	02-2100-2652	문상석 팀장	02-3145-7590

□ **(서비스 주요내용)** 신용카드 소비자가 카드결제 건별 자투리 금액\*을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

- 카드사는 카드이용자의 소비정보를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투자활동 데이터와 결합·분석하여 소비자에게 맞춤형 해외주식을 추천하고,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해외주식에 소액(소수(小數) 단위 포함)으로 투자하는 서비스 제공

\* 일 2만원 한도 내에서 자투리 투자금액 설정(1만원 미만, 1천원 미만 중 선택)

□ **(규제특례 신청내용)** 자본시장법 제45조제2항제1호, 제309호제3항, 시행령 제184조제2항

- 금융투자회사가 계열회사 등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 → 카드사가 투자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신용카드 매출정보와 결합·분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신청
- 주식 예탁시 금융투자회사 소유분과 투자자 소유분을 구분하여 예탁해야 하고, 해외시장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를 구분하여 개설할 필요 → 소수 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동 의무에 대한 규제특례 신청

□ **(심사결과)**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(지정일로부터 2년)

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신한카드(주)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별도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을 할 것
- 신한카드(주) 및 신한금융투자(주)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여 본인, 이해관계자 및 제3자의 이익 추구를 차단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

□ **(기대효과)** 일상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금액을 소수 단위의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소액으로 글로벌 우량주에 대한 투자 기회 제공

- 사회 초년생 및 금융소외계층에게 합리적 지출 가이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쉽게 접근하는 '넋지효과' 기대

□ **(향후일정)** 6개월내 서비스 출시 예정

※ 향후 법령, 제도개선 검토 사항

-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 부작용이 크지 않고 이용자의 편의성이 입증될 경우, 금융투자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기재부 외환제도과	
이나인페이	전혁구 대표 (010-8100-7200)	오재우 과장	044-215-4750
		홍승균 사무관	044-215-4751

- **(서비스 주요내용)**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외국환의 지급 및 수령 뿐 아니라 중개업무까지 영위하여, 자신의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국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을 중개하는 서비스
- **(규제특례 신청내용)** 외국환거래법 제8조, 시행령 제15조의2
-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범위로 대한민국과 외국간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·매도 업무만을 규정→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송금 '중개업'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 요청
- **(심사결과)**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(지정일로부터 2년)

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송금중개용 계좌를 등록하여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고, 분기별 150억원 이내로 운영
- 신청인 및 신청인에게 중개하는 소액송금업체는 소액송금 취급범위·수행방식 변경 신고를 하고, 외환전산망을 통해 중개거래 내역을 보고할 것
- 송금단계별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기 위한 '표준계약서'를 작성·승인받을 것
- 송금중개액도 포함하여 이행보증금을 적립

- **(기대효과)** 해외협력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소액 해외송금업자들의 시장참여를 촉진하여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확대
- 또한, 이 과정에서 경쟁 및 규모의 경제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송금 수수료 등 각종 비용 절감이 기대
- **(향후일정)** 외환전산망 개편 작업 후 하반기 중 서비스 출시

※ 향후 법령, 제도개선 반영 사항

-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 부작용이 크지 않고 이용자의 편의성이 입증될 경우, 외환거래질서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검토

##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[스몰티켓]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보험과		금감원 보험감리국 보험감독국	
스몰티켓	김정은 대표 (02-567-0096)	하주식 과장	02-2100-2960	이준교 팀장	02-3145-8240
		현지은 사무관	02-2100-2962	홍영호 팀장	02-3145-7471

□ **(서비스 주요내용)** 반려동물보험 계약자(반려동물보호자)에게 ①보험에 가입한 경우, ②건강증진 활동 목표를 달성한 경우, ③계약 종료시까지 일정 수준 미만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제휴처(동물병원·운동센터 등)에서 사용가능한 리워드(포인트)를 제공하는 플랫폼

□ **(규제특례 신청내용) 보험업법 제98조**

-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\*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  
→ 반려동물 건강증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리워드(포인트)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이익 한도에 대한 규제 특례를 요청

\* 금품(3만원 또는 연납보험료의 10%중 적은 금액)의 제공,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

□ **(심사결과)**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(지정일로부터 2년)

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「동물보호법」에 따른 동물등록번호 등 동물을 식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반려동물보험으로 한정하며, 가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중 최대 10,000명으로 한정
- 리워드 한도는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한 보험모집 관련 수수료 금액으로 제한
- 반려동물보험 판매시 리워드 제공의 기준, 변경절차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·금감원과 사전에 협의

□ **(기대효과)** 반려동물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반려동물 건강증진을 위한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리워드를 제공하여 보험의 예방적 기능 활성화

-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보험상품의 손해율 하락으로 보험료 절감을 유도하고 반려동물 건강 관리에 대한 통계를 축적

\* '17년 기준 반려동물 가구수 593만가구(전체 가구의 28.1%)

□ **(향후일정)** 앱 개발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시범서비스 실시

※ 향후 법령, 제도개선 반영 사항

-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 부작용이 크지 않고 이용자의 편의성이 입증될 경우, 보험모집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검토

## 4

##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원스탑 플랫폼 (현대카드)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데이터과		금감원 신용평가실	
현대카드	김대우 차장 (02-2167-7367)	이한진 과장	02-2100-2620	김재호 팀장	02-3145-7830
		이소민 사무관	02-2100-2623	윤동진 수석	02-3145-7831

- (서비스 주요내용) 정형화된 금융데이터로서 자체 카드가맹점 데이터 외에도 PG사·VAN사·핀테크기업 등과의 제휴를 통해 비금융·비정형데이터를 수집·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신용 등급을 생성하고 이를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한편,
  - 해당 금융회사들이 제안한 대출조건을 개인사업자에게 안내하고, 대출상담·신청접수·정산 서비스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
- (규제특례 신청내용) 신용정보법 제4조 및 제11조,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
  - 신용카드사는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조회업을 겸업할 수 없음
    - 허가받은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카드사가 겸영업무로 개인 사업자에 대한 신용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요청
- (심사결과)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(지정일로부터 2년)

## 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신용평가모형 개발 완료 시까지 추진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
- 「신용정보법」 개정을 통해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업 허가대상기관에 카드사가 포함될 경우, 지체없이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업 허가를 신청할 것
- 신용카드업 등과 신용평가업을 겸업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업무 수행 방식 등을 보완할 것

- (기대효과)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의 정형화된 금융 데이터로 포용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여 간접 금융시장의 중개 기능 고도화 및 포용금융 실현이 기대
  - 특히, 신청서비스는 카드사가 전자상거래 업체인 PG사 등과 제휴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머신러닝 등 디지털 신 기술을 활용하여 신용평가·대출중개를 한다는 데 큰 의미\*
- \* 해외에서는 이미 Amazon·Paypal·Mercado Libre·Alibaba 등 전자상거래·지급결제·ICT 기업들이 대출·신용평가 시장에 진출 중
- (향후일정) 5개월 간 개발 후 '20.1월에 서비스 출시

## ※ 향후 법령, 제도개선 검토 사항

- 현재 카드사에 개인사업자 CB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「신용정보법」 개정 추진 중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전자금융과		금감원 IT·핀테크전략국	
직뱅크	김진 대표 (010-5370-6967)	이한진 과장	02-2100-2970	정기영 부국장	02-3145-7415
		유원규 사무관	02-2100-2974	강준모 수석	02-3145-7419

- (서비스 내용) ① '발주자'가 도급 거래 대금을 은행 에스프로 계좌에 예치하고, ②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 채권을 '원사업자'에게 지급하면, ③원사업자는 '수급사업자'(하도급 업체)에게 자재구매·외주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채권으로 결제하고, ④원사업자·수급사업자는 에스프로 계좌에 예치한 현금으로 채권을 정산받게 되는 서비스

- (규제특례 신청내용)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, 시행령 제18조 등

-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업자로서 소규모 결제대금예치업(에스프로업) 등록요건\*을 충족하여야 함

→ 등록 없이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요청

- \* i)재무건전성(부채비율 200% 이내), ii)인력요건(전산전문인력 5명, 직무분리), iii)물적요건(전산·보안설비 등), iv)사업계획의 타당성 [자본금 요건(3억원)은 기 충족]

- (심사결과)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(지정일로부터 2년)

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①채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출 것 ②발주자나 원사업자 간의 사정으로 선의의 하도급업체가 자금 정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
-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후 6개월 내에 재무건전성·인력요건·물적요건을 갖출 것

- (기대효과) 에스프로 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기반으로 정산주기를 단축(현재 60~150일)하여 도급·하도급 대금 지연 문제를 해결

- 또한 거래 은행에만 양도할 수 있던 전자채권(전금법 §2)과 달리 수급사업자에게도 채권 양도가 가능하여, 당장 현금 없이도 하도급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

- \* (발주자) 별도 착수금 지급이 불필요 (원사업자) 결제지연 위험 감소 (수급사업자(하도급업체)) 미수금, 결제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해소

- (향후일정) 금년 내 서비스 출시 예정

※ 향후 법령, 제도개선 검토 사항

-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 부작용이 크지 않고 이용자의 편의성이 입증될 경우,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등을 검토